

※ [부록2] 수도권·규제지역 주택구입자에 대한 전입의무 유예 요건

◆ 전입의무 유예 요건

● 수도권, 규제지역에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이용 시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의무

▶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입의무를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이행

요건	유예1 내 용	유예2 내 용
매도인	① 주택 매도인(세대기준)이 다주택자 * 매매계약체결일 기준 매도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 (보유주택의 소재지와 무관)	① 주택 매도인(세대기준)이 다주택자 * 매매계약체결일 기준 매도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 (보유주택의 소재지와 무관)
매수인	② 주택매수인(부부합산)이 “대출신청일” 기준 무주택자	② 주택 매수인(부부합산)이 “대출신청일” 기준 무주택자
대상 주택	③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(매도인이 잔금일 기준 2년 이상 보유 필요)	③ 수도권·규제지역 소재 APT로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만기일 시상환 주담대가 존재하는 경우
주택 거래 시점	④ ‘26.5.9일’까지 매매계약 체결* (가계약은 인정하지 않음) * 단, 토허구역은 관할 지자체에 ‘26.5.9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접수 ⑤ 잔금일(보금자리론 실행일)이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(10.15대책 前 기준 조정지역)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(10.15대책 後 신규 조정지역)	④ ‘26.12.31일’까지 매매계약 체결* (가계약은 인정하지 않음) * 단, 토허구역은 관할 지자체에 ‘26.12.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접수
임대차 승계 여부	⑥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주택거래 * ‘26.2.12일(대책발표일)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으로서 해당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‘28.2.11일 이전일 것	⑥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주택거래 * <u>대책발표일(26.4.1일)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</u>
전입 시기	⑦ 전입의무를 <small>현행</small>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유예 임대차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이행	⑥ 전입의무를 <small>현행</small>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유예 임대차계약 종료일* 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이행 * (원칙) 발표일(26.4.1일)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(예외) 다음의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종료일 1) 대책 시행일 전일(‘26.4.2일~4.16일)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2) 발표일(‘26.4.1일)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(‘26.7.31일)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

